

울산지방법원 2023. 3. 31 선고 2022가단106308(본소), 2023가단100536(반소) 판결

[대여금 ·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피고(반소원고)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정인철

변 론 종 결 2023. 3. 10.

판 결 선 고 2023. 3. 31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2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울산 중구 C 대 44㎡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. 5. 30. 접수 제493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 3,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

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주문 제2항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1) 피고의 아버지 D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자신이 소유한 울산 중구 C 대 44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. 5. 30. 접수 제49308호로 채권최고액 3,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하고,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2)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. 3. 25.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위 D은 2016. 9. 초순경 사망하였고,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. 9. 6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원고는 2022. 3. 20.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(애초 양수받은 채무의 성격과 잔존 채무액은, 원고가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알 수 없다)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이 1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써 위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살피건대, 원고는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여 시효 기산일에 관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(민사소송법 제150조), 피고의 위 항변 및 주장은 이유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고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황운서